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호사 징계사유에 재판 불출석 추가〉

■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63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변호사 징계사유에 재판 불출석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변호사 징계사유에 재판 불출석 추가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1조(징계 사유) ① (생략)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제24조의2(신의성실의무 등) ① 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u>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u> 제91조(징계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4.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u>

-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과, 의뢰인에게 수임 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줄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으나 그 결과조차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변호사의 불출석을 변호사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1조, 제24조 및 제25조¹⁾에 변호사의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무 및 회칙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²⁾윤리규약에도 변호사의 성실의무 및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³⁾도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1)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2) 「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8조(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9조(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현행 제91조제2항⁴⁾ 각 호의 징계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였거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진행절차를 사전고지 하지 않았거나 재판의 진행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⁵⁾나,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징계받은 사례⁶⁾가 다수 있음.

○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관련한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연방변호사법 제59a조⁷⁾에서 변호사의 신의성실의무를 명시하며 하위규범인 직업규칙에 규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규칙에는 신의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연방변호사법 제113

4)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2015-113호, 제2015-166호, 제2016-133호 등

6)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2014-69호, 제2015-169호, 제2016-54호 등

7)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59a조 (정관)

(2) 직업규칙은 동법의 규정 내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수 있다.

1. 일반적 직무상 의무 및 기본의무

a) 신의성실(Gewissenhaftigkeit)

조8)에서 제59a조에 따라 동법 또는 직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실의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지 않음.

일본은 변호사법 제1조⁹⁾에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6조제1항¹⁰⁾에서 이 법(변호사법)에 위반했을 때,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칙에 위반했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실의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지 않음.

미국은 변호사협회가 자치규범(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¹¹⁾)을 제정하고 각 주의 법원이 이를 승인 또는 채택하는 방식이며, ABA 직무규칙 Rule 1.3¹²⁾에 성실의무(Diligence)를 규정하고, ABA 직무규칙 Rule 8.4¹³⁾에 직무규칙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제시할 뿐, 성실의무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지 않음.

8)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113조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변호사가 제59a조에 따라 동법 또는 직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원의 조치가 부과된다.

9) 일본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해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해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일본 변호사법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①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은 그 법률 또는 소속 변호사회 혹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칙에 위반하여 소속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하고 기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비행이 있었던 때에는 징계를 받는다.

11)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2) 미국 ABA 직무규칙 Rule 1.3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함에 있어서 성실하고도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3) 미국 ABA 직무규칙 Rule 8.4 변호사나 로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a) 직무규칙위반행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며, 변호사가 부담하는 성실의무에는 다양한 행위 태양이 포함되는데 개정안의 행위 태양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해외에서도 성실의무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실익이 없고, 징계사유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